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후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42 발의연월일: 2020. 6. 12.

발 의 자:윤후덕·이원욱·김정호

박 정・임종성・임오경

정성호 · 고용진 · 우원식

서삼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아파트 등으로 이루어진 주택단지 내의 도로는 다수의 사람과 차마가 통행할 수 있는 장소로서, 보행자의 통행과 차마의 진·출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 법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가 없고, 교통사고 발생 시에도 그 운전자에게 이 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없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.

이에 아파트 등으로 이루어진 주택단지 내의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이 법에 따른 '도로'에 포함함으로써 주택단지 내 도로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호마목 신설).

법률 제 호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호 마목(종전의 라목) 중 "차마(車馬)가"를 "차마가"로 한다.

라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조제7호마목에 따른 주택단지 내의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(車馬)가 통행할 수 있는 장소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| 제2조(정의) |
|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| |
| 1. "도로"란 다음 각 목에 해당 | 1 |
| 하는 곳을 말한다. | |
| 가. ~ 다. (생 략) | 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 |
| <u><신 설></u> | 라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|
| | 법」 제2조제7호마목에 따 |
| | 른 주택단지 내의 다수의 |
| | 사람 또는 차마(車馬)가 |
| | 통행할 수 있는 장소 |
| <u>라.</u>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 | 마 |
| 정 다수의 사람 또는 <u>차마</u> | <u>차</u> 마 |
| <u>(車馬)가</u> 통행할 수 있도 | <u>가</u> |
| 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 | |
| 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 | |
| 할 필요가 있는 장소 | |
| 2. ~ 33. (생 략) | 2. ~ 33. (현행과 같음) |